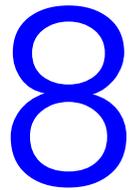


건설공사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 -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ongsj@ricon.re.kr)

- I. 서론
- II.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및 법적 시사점
- III.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적 의의 및 입법 체계상 한계
- IV.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
- V. 결론



■ 국문요약 ■

건설공사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체계로 수행된다. 최근 건설공사 안전 사고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현행 건설공사 관련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체계 정당성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공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의 규정에서 건설사업 자를 건설업에 국한하지 않고 건설용역업까지 확대하여 설계-시공-감리-유지관 리의 모든 주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에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건설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건설공사 안전사고,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정당성의 원리

I. 서론

최근 공사중 건축물 붕괴사고가 또 발생했다.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등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 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 안전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수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공학·기술적 대책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공사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체계로 수행된다. 관련 법규도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매우 다양하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복잡·다양한 법률이 체계화되지 못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유지관리자 등 건설공사 관련 수범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은 저하되고, 건설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법률을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본법인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법률을 체계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및 법적 시사점

1.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2023. 4. 29. 인천광역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m²) 붕괴와 이로 인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m²)가 붕괴된 것이다.¹⁾

1) 이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2023. 7. 5.

그림 1 인천광역시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전경



정부는 붕괴사고 현장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건설안전 부문에서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시 제 2021-194호) 및 관련 현장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하여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업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골조완료시 까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용 외부주차장 운영에 따른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 등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부문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을 지적하였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업자는 콘크리트용 골재시험의 시험빈도를 관련기준(물량, 기간 등)과 다르게 ‘골재 원마다’로 일괄적용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업자는 이를 '이상없음'으로 검토하고 발주청은 시험빈도 등을 조정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유' 없이 승인하였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청(LH공사)은 본 공사의 품질관리계획과 레미콘 자재품질 확인이 미흡함에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미실시하였다. 레미콘 공급원 승인시 자재품질 확인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고시 제2020-720호) 제3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공급원 승인을 위한 공급업체 사전점검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 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고, 시험결과 국가건설기준(KCS 14 20 10)에 따라 잔골재의 조립률이 ± 0.20 이상 변화 시 콘크리트 배합 보완·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공급업체 13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의 시험결과 잔골재 조립률이 $+0.31$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콘크리트 배합 보완·변경 등의 검토없이 레미콘을 타설하였다.

셋째, 설계·시공 부문에서 일부 구조물 설계도서 간 불일치와 일부 구조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을 지적하였다. 일부 구조물 설계도서 간 불일치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에 전단보강철근을 설치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업자는 203동 주변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7개소)에 전단보강철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구간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구조물 구조부 강도 확인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현장 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24~27MPa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업자는 203동 주변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7개소)에 전단보강철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구간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²⁾

2) 설계·시공 부문에서 구조물 구조부 강도 확인 여부도 지적되었으나,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의 일부 벽

2.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법적 시사점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①전단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내력 부족, ②조경공사 등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시공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③붕괴 구간 콘크리트의 재료품질 저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하였다.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건설공사 안전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처럼 수 많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 역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이제는 공학·기술적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직접적인 사고 유발 단계로 지적한 설계·시공 부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의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위반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본 원칙을 규정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또는 형사적 처벌과 연계되지도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체, 슬래브, 기둥 등에 대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슈미트 해머 비파괴시험)으로는 정확한 강도의 확인이 어려워 추가정밀안전진단으로 확인토록 조치하고, 추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콘크리트 강도 점검 등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2023. 7. 5.

III.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적 의의 및 입법 체계상 한계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 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적 의의와 한계를 규명하는 것은 커다란 입법과제가 될 것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적 의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즉, 건설공사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법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둘째, 기본법의 제명을 가진 법률인지 무관하게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합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셋째,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경우이다.³⁾

이러한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첫 번째의 ‘기본법’의 명칭을 사용하는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은 총칙에서 건설산업 관련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2조). 또한,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법 제3조). 그리고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6조), 정부·발주자·건설사업자 등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이렇듯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천명·지시하는 기본법으로서,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규를 체계화·종합화하고, 계속성·일관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18-20면.

2.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체계상 한계

체계 정당성의 원리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리를 말한다. 입법자는 입법과정에서 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위해 체계 정당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법령으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할 때에는 기존 법령과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건설산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과 건설용역에 관한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법 제 2조). 「건설산업기본법」은 과거 1958. 3. 11. 건설업자 및 건설공사를 규율하는 「건설업법」을 모태(母胎)로 한다. (구)「건설업법」은 1996. 12. 30. 건설시장의 개방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존 건설업 뿐만 아니라 건설용역업까지 규율하게 되었고, 기존 「건설공제조합법」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을 근거로 운영하던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내용도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용역업은 사실상 개념정도만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제2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제3장), 시공 및 기술관리(제4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기업사업자 지원(제5장), 건설사업자의 단체(제6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제7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제8장), 시정명령 등(제9장), 보칙(제10장), 벌칙(제11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본법이다. 건설공사는 「건축법」 및 하위규범,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 규범 등을 통하여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체계로 수행된다. 그러나 현재 건설공사는 설계·감리의 경우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건설공사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기술적·전문적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건설

4)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2, 10면.

IV.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

공사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제반 법규를 체계화·종합화하여야 하나, 각각의 법률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건설공사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분리·단절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현행 건설공사 관련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체계 정당성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 단기적 확보 방안

건설공사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체계로 수행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체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제7조의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이다. 다만, 현행 정부,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을 뿐, 설계자, 감리자, 유지관리자의 책무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유지관리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공사의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입법 체계 정당성 원리를 확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관련 주체의 책무와 건설공사 수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천명·지시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의 규정(제2조)과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제7조)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의 규정에서 건설사업자를 ‘건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에 국한하지 않고 건설용역업까지 확대하여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모든 주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에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건설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8. ~15. (생략)</p> <p>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 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u>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p>8. ~15. (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u>건설사업자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u>건설공사가 적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2. 중·장기적 확보 방안

기본법은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법률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기술적·전문적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규를 체계화·종합화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방향성 정도만 규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총칙(목적, 정의,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등)과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건설산업 관련 중소건설사업자의 지원 등을 말한다. 그리고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는 각각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가칭)「건설업법」, 「건축물관리법」 및 「기반시설관리법」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건설 보증과 관련해서는 (가칭)「건설보증 및 금융에 관한 법률」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화하는 것

V. 결론

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유지관리자 등 건설공사 관련 수범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설공사 관련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체계 정당성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공사 안전성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의 규정에서 건설사업자를 건설업에 국한하지 않고 건설용역업까지 확대하여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모든 주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에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건설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체계 정당성 확보 방안이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2023. 7. 5.
2.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3.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2.